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07
----------	------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사회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치매지원서비스 원활한 지원을 위한 「하남시 치매관리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정의에 관하여 규정(제1조~제2조)
- 나. 운영, 대상, 업무 등 사업 수행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제3조~제7조)
- 다.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제10조)
- 라.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제11조~제13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덧붙임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9년 6월 14일 ~ 2019년 7월 5일 (21일)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평가 : 의견수용

- 안 제7조 협의회 구성에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균형참여 보장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건강증진과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하남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의 상담·등록 지원 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4. 치매 관련 인지자극프로그램 운영
5. 치매가족 지원 사업

6.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장)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보건소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6조(치매관리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1.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2.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 치매환자가족 등의 주민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 기관 및 홍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건강증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건강증진과장 이주윤
	팀장 직위·성명	정신보건팀장 박민영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최은별 (790-6546)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치매관리법 제18조 (비용의 내용)

나. 비용 발생 요인

- 치매관리법 제18조(운영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에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규정에 의한 예산 추계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835	838	842	846	850
치매안심센터 운영	775	778	782	786	79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1	1	1	1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9	59	59	59	59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국고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교부
 -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공후견사업 국비 80 도비 3 시비 17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 혁신기획관과 협의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주운)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세 입		678,001	680,574	683,894	687,214	690,534	3,420,217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밀보호조		619,920	622,400	625,600	628,800	632,000	3,128,72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밀보호조		29,744	29,744	29,744	29,744	29,744	148,720
중증치매노인 중증치매노인기금보조		605	605	605	605	605	3,025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도비		23,247	23,340	23,460	23,580	23,700	117,32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시도비		4,462	4,462	4,462	4,462	4,462	22,310
중증치매노인 중증치매노인기금보조		23	23	23	23	23	115
세 출		835,145	838,245	842,240	846,245	850,240	4,212,115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밀보호조		619,920	622,400	625,600	628,800	632,000	3,128,72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밀보호조		29,744	29,744	29,744	29,744	29,744	148,720
중증치매노인 중증치매노인기금보조		605	605	605	605	605	3,025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도비		23,247	23,340	23,460	23,580	23,700	117,32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시도비		4,462	4,462	4,462	4,462	4,462	22,310
중증치매노인 중증치매노인기금보조		23	23	23	23	23	115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예산(지비)		131,733	132,260	132,940	133,620	134,300	664,85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체예산(지비)		25,282	25,282	25,282	25,282	25,282	126,410
중증치매노인 중증치매노인기금보조		129	129	129	129	129	645
재원 조달		835,145	838,245	842,240	846,245	850,240	4,212,115
의존 재원	소 계	677,978	680,551	683,871	687,191	690,511	3,420,102
	보조금	677,978	680,551	683,871	687,191	690,511	3,420,102
자체 수입	소 계	157,144	157,671	158,351	159,031	159,711	791,908
	지방세	157,144	157,671	158,351	159,031	159,711	791,908

관계법령 발췌서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별표 2의 3]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일 것

나. 보건·위생·교통·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장소일 것

다.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할 것

라. 비상상황에 대비한 응급의약품 등을 구비할 것

마. 다음의 기준을 갖춘 시설·장비를 마련할 것

1) 대기실: 등록, 상담 등을 기다리기 편안한 공간일 것

2) 사무실: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줄 것

3) 교육·상담실: 상담, 안내, 설명 등에 필요한 탁자, 소파 등을 갖추어 줄 것

4) 검진실: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등에 적합할 것

5) 프로그램실(쉼터): 신체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 줄 것

6) 가족카페

7) 화장실: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2. 인력 기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